

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1.제안이유

- 대학·연구기관·기업·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광주·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방세를 과세면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광주·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(안 제23조의 3)
 -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·전남테크노파크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·전남테크노파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

3.검토의견

-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“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”와 동법 제9조 “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”에 의거 재단법인 광주·전남 테크노파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(재산세, 종합토지세) 감면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조례내용으로
- 광주·전남테크노파크는 광주·전남지역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자치단체와 기술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업, 기존산업의 고도기술화를 이루기 위하여 산·학연 공동기술 개발과 창업보육, 연구개발형 기업단지의 운영 등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.
- 광주광역시광주·전남테크노파크재단법인운영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, 사업 확장 시 투자 여건에 따라 우리 구에도 사업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